

[사 건 명] 행심 2016-39

음주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

청구인 : ○○○

피청구인 : ◇◇고등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변경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6. 9. 13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주에 따른 『교내봉사 1일』 처분을 취소하고 별점 5점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 5명은 ◇◇고등학교 학생들로서 2016. 8. 16~ 2016. 8. 17. 강화도 과학캠프 체험학습에 참가하여 음주를 한 건에 대하여 2016. 9. 2.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교내봉사 2일 처분을 하였고, 2016. 9. 13.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교내봉사 1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.

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.)

나.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6. 10. 19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.

Ⅱ. 청구인들의 주장

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.

- 가. 피청구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하여 훈계, 지도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만큼,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- 나. 선도위원회에서는 인솔교사, 담임교사, 청구인들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았고, 이미 징계를 양정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위원회의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만큼,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- 다. 피청구인은 ◇◇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징계기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- 라. 청구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였으며, 교육적 차원과 피선거권 박탈, 각종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Ⅲ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가. 지도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발견하면 일차적인 훈계를 거친 후 교칙에 위배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.

- 나. 인솔교사는 서면으로 진술을 받았고, 담임교사도 충분한 진술기회를 제공하였으며, 피청구인은 반성문 작성이나 훈계처리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한 적이 없다.
- 다. 징계기준표 [표4]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선도위에서 구체적인 징계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, [표3] 하단에 발견즉시 징계처리 한다는 항목은 음주, 흡연, 절도 등은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, 이런 사안은 [별점기준표]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.
- 라. 교내봉사 1일은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고, 이번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11명 중 5명만이 불복하였으며, 음주한 학생의 학부모 중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 반성하도록 해달라는 분도 있는 만큼,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.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1. 관계법령

가.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18조

나. 『◇◇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』 제3조, 제6조, 제8조

2. 판 단

가. 인정되는 기초 사실

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, 증거자료,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청구인들은 2016. 8. 16. ~2016. 8. 17. (1박2일) 경 피청구인이 진행하는 강화도 과학캠프 체험학습에 참가하였다.
- 2) 청구인들은 위 과학캠프 체험학습에 참가한 다른 반 학생들의 권유로 저알콜 음료를 섭취하였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

- 1) ‘◇◇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’ 제3조는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두고 있고, 제6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경고,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, 출석정지, 퇴학처분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고, 제8조는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, 퇴학처분의 징계기준은 [표4]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2) 위 제8조에 따른 [표4] 징계기준에 의하면 (31)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은 [표3]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, [표3]에는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한 별점부과기준의 내용이 없으며, 다만 하단에 음주 등은 발견즉시 징계처리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뿐이다.
- 3)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◇◇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징계기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징계하였고, 교육적 차원과 각종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,

위 규정의 [표 4] 징계기준에서 (31) 음주를 한 학생의 징계기준에 대하여는 [표3]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만큼, 규정해석상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기준은 [표3]을 따라야 하나, [표3]에서 별점 부과기준으로서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, 결국 위 학생생활규정에는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징계기

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

다만, 위 학생생활규정상에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하여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[표3]에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징계처리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, [표4]에 징계를 받을 태양으로서 음주를 한 학생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상 징계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,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의 필요성과 청구인들의 상황,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경고,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, 퇴학처분 중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면, 청소년시기의 음주의 심각성과 폐해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, 청구인들의 부모님들이 청구인들을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, 이 사건 경위가 다른 반 학생들의 권유에 의하여 호기심 때문에 이루어진 점, 이 사건 음주가 발각이 된 것이 제3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자진신고를 한 점, 음주의 정도, 청구인들이 학업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인 교내봉사를 받게 되면 각종 표창이 제외됨으로 대학진학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'교내봉사 1일'을 감경하여 경고로 하되, 경고 중에서 학생생활규정상 최고의 벌점인 5점을 부과하여 처분한다.

V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,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